

수업 동 의 서

[보강, 이월, 환불 관련]

1. 수업중단 시 환불은 교육청 규정을 준수합니다.
2. 수업하기로 한 당일 날 중단 의사를 밝히면 그 날의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(수업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는 늦어도 수업일 전일까지 학원으로 연락 주십시오)
3. 다음의 경우 수업에 대한 보충이나 수강료 환불(또는 이월)은 해드리지 않습니다.
 - 1) 내신 준비 기간과 내신 기간에 수업을 빠지는 경우
(학원은 휴원 하지 않고 수업이 계속되며, 이 때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)
 - 2) 학원 공식 휴강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.
 - ① 법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
 - ② 하계 휴가 : 7월말에서 8월초의 3일간이며 매년 초에 공고합니다.
 - ③ 동계 휴가 : 설 연휴 전후를 하루씩 더 쉬게 됩니다.
 - 3) 학생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
예 : 학교행사(각종 수련회, 수학여행), 학교대표로 대회참석,
학교에서 갑자기 하교가 늦어지는 경우, 가족 경조사, 학생 연수, 병결 등.
- 4) 천재지변 (예 : 폭설, 폭우 등)

[수업 중단과 재입학 관련]

1. 다음의 경우 수업이 중단되고 퇴원처리 될 수 있습니다.
 - 1) 첫 수업에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퇴원처리 됩니다.
첫 수업 시작날짜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안 되오니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.
 - 2) 경고를 받고도 숙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학생은 수업중단 예고를 받습니다.
수업중단 예고를 받고 유예기간 동안 결석을 하거나 숙제가 안 되면 마지막으로 수업중단
경고를 받게 되며, 수업중단경고가 풀릴 때까지 한 번이라도 결석을 하거나 숙제가 안 되면
학원 측에서 바로 퇴원조치 합니다.
 - 3) 선생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여 수업계획이 왜곡되고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
수업이 중단되고 퇴원조치 합니다. 무리한 요구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.
 - ① 학원측의 판단과 관계없이 학부모가 스스로 정한 진도계획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
 - ② 주 2 회 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이 주 1 회 수업을 요구하는 경우
 - ③ 타학원 수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수업을 일찍 마치기를
원하는 경우
 - ④ 빈번히 숙제 량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해서 적절한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없는 경우
 - ⑤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진도를 빨리 나가기만을 원하는 경우
 - ⑥ 내신 준비 기간과 내신 기간에 필요이상의 결석을 위해 진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⑦ 학습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 가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학원측에서
제시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
 - 4) 수강료 납부기간과 환불(이월) 및 보강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
학부모님께서 본 학원 운영상 정해진 규정에 대해 변경 또는 수정할 것을 학원 측에
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업이 중단되고 퇴원조치 합니다.

2. 수업중단 경고로 퇴원한 경우 또는 학생의 수업상황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 그 외에 학원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수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.

[수업 관련]

학생이 그 날의 학습 목표량을 완수할 경우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 수 있으며

학생의 학습상황에 따라 수업마감시간은 매번 불규칙합니다.

따라서 학생이 정규수업 시간표의 수업방식에 따라 학습목표량을 완수할 경우 조기귀가 할 수 있으며 수업마감시간을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통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.

- 위와 같이 본인은 수업규정과 원칙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그 규정과 원칙을 준수합니다.

